

보도시점

(전매체) 10. 10.(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국내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모기금(펀드) 시대 열린다

-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규정을 담은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10),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제도 시행(10.1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벤처모기금(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되어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벤처모기금(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기금(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세계적(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기금(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 기금(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며,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②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기금(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③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40%로 상향하고, 사모기금(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여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벤처모기금(펀드)가 활발히 조성되어 정부 모태기금(펀드)와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실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이권재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김연학 (044-204-7711)
			주무관	오선혜 (044-204-7718)



참고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개요 및 세제 인센티브 주요 내용

□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개요**

- (주목적 투자) 총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자기금(펀드))에 출자
 - 모기금(펀드) 존속기한은 최소 5년 이상
- (최소 결성규모) 출자금 총액 최소 1,000억원 이상, 분할 출자시 최초 출자금은 200억원 이상
- (운용사)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회사^{공동운용}
- (운용 자율성) 수익성 중심의 자기금(펀드)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하도록 상장주식 보유, 사모기금(펀드) 출자 등 기금(펀드) 운용 자율성 확대

<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투자 및 운용 자율성 확대 주요 내용 >

구 분	자율성 확대 내용
투자 자율	① 출자의무(총 운용 자기금(펀드)에 60% 이상 출자)를 준수할 경우, 상장주식 보유 제한 없음 (최대 40%까지 보유 가능)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출자 허용
모기금(펀드) 운용 편의	① 모기금(펀드) 운용사가 자기금(펀드) 운용사로 활동 가능 ※ 위험 분산을 위해 모기금(펀드)가 최대 30%까지 출자 가능 (자기금(펀드) 지분 10% 미만) ② 자기금(펀드)에 출자한 모기금(펀드)를 출자자 1인으로 산정

□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세제 인센티브** ('23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 (출자)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및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신설
 - (법인투자자) 민간 벤처모기금(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벤처기업 실투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세액공제
 - * Max(벤처기업 실투자금액, 모기금(펀드) 출자금액의 60%) × 5%
 - ** (해당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 × 3%
 - (개인투자자)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운용)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기금(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회수) 개인 및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운용사가 모기금(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